E - 155 - 2016

# 전기작업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

2016. 11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류보혁
- 제·개정 경과
- 2016년 11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사업장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해설지침서(2013.1.25.)
- NFPA 70E(Standard for Electrical Safety in the Workplace)
- HSG85 Electricity at Work: safe working practices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(위험성평가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 제3절(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)
- 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, 고용노동부고시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6년 11월 30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# 전기작업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

## 1. 목 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(위험성평가),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 및 제2편 제3장 제3절(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)」 및 「KOSHA GUIDE(전기작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」에따라 전기작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적용 범위

- (1) 이 지침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·기구 또는 전로(이하 "전기설비"라 한다)의설치·해체·정비·점검(설비의 유효성을 장비,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한다) 등의 작업(이하 "전기작업"이라 한다)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- (2) 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  - (가) 선박, 철도차량, 항공기, 자동 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
  - (나) 광산의 지하 시설물
  - (다)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, 송전, 배전용의 레일 설비
  - (라)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

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위험성(Risk)"이란 유해·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 능성(빈도)과 중대성(강도)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.
  - (나) "위험성평가(Risk assessment)"란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·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 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(빈도)과 중대성(강도)을 추정·결 정하고 감소대책을 수 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.

- (다) "유해·위험요인(Hazard)"이란 유해·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 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.
- (라) "유해·위험요인 파악(Hazard identification)"이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.
- (마) "위험성 추정(Hazard estimation)"이란 유해·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 다.
- (바) "위험성 결정(Hazard evaluation)"이란 유해·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.
- (사) "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(Risk control action & implementation)"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 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 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.
- (아) "기록(Recording)"이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 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4. 일반사항

## 4.1 위험평가계획 수립

- (1) 위험성평가를 할 때에는 사전에 위험성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이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.
  - (가) 실시의 목적 및 방법
  - (나) 실시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
  - (다) 실시 연간계획 및 시기
  - (라) 실시의 주지방법
  - (마) 실시상의 유의사항
- (2) 위험성 평가 실시시기는 다음과 같다.

- (가)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,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.
- (나) 수시평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해당계획의 실행을 착수하 기 전에 실시하고,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한다. 다만, ④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.
  - ① 전기설비의 설치·이전·변경 또는 해체
  - ② 전기설비의 정비 또는 보수
  - ③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
  - ④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
  - ⑤ 그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- (다)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,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.
  - ① 전기설비의 설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
  - ②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
  - ③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
  - ④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

## 4.2 전기의 위험성 및 안전대책

#### 4.2.1 전기의 위험성

- (1) 전기에너지에 의한 감전이나 화상으로 인한 재해의 발생빈도는 높지 않으나 일단 발생하게 되면 치사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. 또한 전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.
  - (가) 전기는 형체, 소리는 물론 냄새도 없기 때문에, 전기가 흐르고 있는 곳(충전부)을 외관상으로는 전혀 확인 할 수 없다.
  - (나) 전기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이 아주 빠르므로, 사고 발생시에는 판단에 의해 대 피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.
- (2) 단락사고로 인해 전기아크가 발생하는 경우,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고온의 열에 의한 화상재해 또는 강한 자외선 방사에 의해 눈이 손상될 수 있다.
- (3) 전기아크·과열 및 누설 전류는 인화성 물질을 점화시킴으로써 화재나 폭발 사고의 원

E - 155 - 2016

인이 될 수 있다.

- (4) 대부분의 감전재해는 다음과 같이 설비에서 작업(이하 "활선작업"이라 한다.)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(이하 "활선근접작업"이라 한다.)하는 중에 발생하게 된다.
  - (가)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인가된 경우
  - (나) 전압이 인가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작업자가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적절한 방호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적절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 은 경우

### 4.2.2 전기설비 사용 및 작업상의 안전

- (1) 전기설비는 적합하게 사용할 때 감전 또는 화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적절히 설계·제조·설치 및 정비하여야 한다.
- (2) 감전 또는 화상재해 방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설비의 경우, 해당 설비의 사용자는 그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.
- (3) 노출형 배전반·퓨즈반 및 배전용 철 구조물 등의 설비들은 당해 위험과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유자격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보안구역 내에 위치해야 한다. 이러한 설비에는 불의의 접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.
- (4) 배터리 차와 같이 작동전압이 낮아 감전위험은 거의 없지만, 이러한 저압 설비에서도 도체가 과열되어 전기아크나 화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.
- (5) 물기·습기 또는 분진 등 설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설비는 전기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정과 사용에 주의한다.
- (6) 특히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는 폭발위험장소에서는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」에 따라 방폭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7) 설비는 주의 깊은 설계 및 선정, 이격거리의 확보, 연동장치(Interlock)의 채용 등에 의하여 작동상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(8) 제어반은 시운전·고장부위 찾기·교정 등의 작업 시에 감전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

E - 155 - 2016

위해 절연된 도체와 덮개 있는 단자대를 사용하도록 한다.

- (9) 연동장치는 충전부 접촉으로 인한 상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.
- (10) 전기설비 내에 전원선과 제어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서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## 5. 전기작업 위험성평가

#### 5.1 일반사항

- (1) 사업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(또는 대표이사) 등은 위험성평가를 총괄하고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부서장에게 위험성평가 실시를 주관하도록 한다.
- (2)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, 위험 성의 추정, 결정,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·실행 한다.
- (3)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.
- (4) 안전관리주관부서장(또는 위험성평가 주관팀장)은 평가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.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, 관련학문을 전 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.

### 5.2 위험성평가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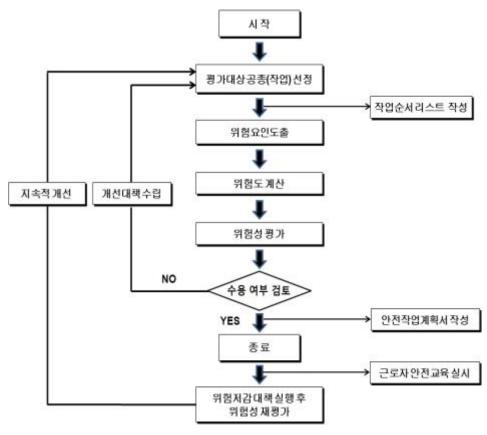
위험성평가 절차는 <그림 1>과 같다.

- (1) < 1단계 > 사전준비[평가대상 공정(작업) 선정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,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 대상 공정이 결정 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
- (2) < 2단계 > 유해·위험요인 파악(도출)

# KOSHA GUIDE E - 155 - 2016

가장 중요한 단계, 작업공정(단위작업)별 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

- (3) < 3단계 > 위험성 추정 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, 가능성과 중대성의 조합
- (4) < 4단계 > 위험성 결정 사업장 특성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위험성을 추정한 결과 허용할 수 있는 위험, 허용 불가능한 위험을 결정하는 것
- (5) < 5단계 >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



<그림 1> 위험성평가 절차

## 5.3 위험성평가팀 구성

위험성평가팀의 구성은 해당 공종 및 설비에 경험이 있는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로 구성한다.

E - 155 - 2016

- (1) 해당 설비 또는 작업 담당 관리감독자(부서장)
- (2) 해당 설비 또는 작업자
- (3)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(위험성평가기법 숙지자)
- (4) 기타 해당 설비 또는 작업에 관련된 전문가 등

## 5.4 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

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- (1) 관련 전기설비 도면 및 선로 계통도
- (2) 작업 절차서(작업지침서)
- (3) 개인보호구, 방호구, 활선작업용 기구, 활선작업용 장치
- (4) 기타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

## 5.5 위험성 평가 실시

- (1)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정보를 작성한다(<표 5> 참조). ※ 붙임의 표는 작업의 종류, 공법에 따라 일부 수정할 수 있음
- (2)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다(<표 6> 참조). ※ 붙임의 표는 작업의 종류, 공법에 따라 일부 수정할 수 있음
- (3)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한다(<표 7> 참조).

위험성 추정은 부상 등의 발생가능성(<표 1> 참조)과 중대성(<표 2> 참조)의 곱셈식으로 위험성을 추정(<표 3> 참조)한다.

※ 붙임의 표는 작업의 종류, 공법에 따라 일부 수정할 수 있음

## <표 1> 위험의 발생 가능성(빈도)

구분	가능성	4	내용
최상	매우 높음 5		O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, 표지 부착이 안된 곳이 많으며, 안전수칙·작업표준 등도 없음
상	높음	4	O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·방호덮개, 기타 안전장치가 없거나 상당히 미흡하고, 비상정지장치, 표시·표지는 웬만큼 설치되어 있으며, 안전수칙·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
중	보통	3	<ul> <li>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·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,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등 미흡한 곳이 많고, 위험영역 접근,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, 안전수칙·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</li> </ul>
하	아 I 말을 I 2 I		가드·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,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, 위험영역에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, 안전수칙·작업표준(서) 등이
최하	매우 낮음	1	<ul><li>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</li><li>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</li></ul>

## <표 2> 위험의 중대성(강도)

구분	중대	성	내 용		
최대	사망	4	사망재해		
대	장해 발생	3	휴업 1월 이상인 재해		
중	병원치료	2	휴업 1월 미만인 재해		
소	비치료	1	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재해		

## <표 3> 위험성 추정표

가능성	중대성	최대	대	중	소
	단계	4	3	2	1
최상	5	20	15	10	5
상	4	16	12	8	4
중	3	12	9	6	3
하	2	8	6	4	2
최하	1	4	3	2	1

## 6. 전기작업 안전대책

## 6.1 안전대책 관리기준 설정

- (1) 안전대책은 기본적으로 법적기준을 만족해야 하며, 또한 수용가능 위험수준으로 위험성을 낮출 수 있어야 하며, 그 관리기준은 <표 4>와 같다.
- (2) 위험성이 7 이상인 경우에는,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, 위험성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위험성을 재평가한 이후 수용 가능한 위험으로 저감시킨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.
- (3) 위험성이 7 이상인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(또는 대표이사)에게 보고하고 위험성이 감소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한다.

			-		
위험성 크기		관리기준	개선 방법		
16~20	매우 높음	O 위험을 줄일 때까지 작업을 금한다. O 자워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줄	위험성 불허		
15	높음	O 자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줄 어들지 않으면 작업을 계속 금지한다.	(즉시 작업 중지.)		
9~12	약간 높음	<ul><li>오 우선적으로 위험을 줄여야 한다.</li><li>조치는 최단기간 내에 완료 한다.</li><li>위험이 현재 진행중이면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조치를 한다.</li></ul>	조건부 위험성 수용 (현재 위험이 없으면 작업을 계속하되, 위험 감소활동을 실시한다.)		
7~8	보통	<ul><li>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.</li><li>이 계획된 일정이내에 완료한다.</li></ul>	검도될중을 걸지만다.)   		
4~6	낮음	<ul><li> 추가로 조치할 필요는 없다.</li><li> 간단한 조치사항을 생각해 볼수 있다.</li><li> 관리상태가 유지되도록 감시필요하다.</li></ul>	위험성을 수용 (현 상태로 계속 작업 가능하다.)		
1~3	매우 낮음	ㅇ 별도의 조치/개선계획 불필요하다.			

<표 4> 위험성 관리기준

## 6.2 안전대책 실시 및 조치

### 6.2.1 위험관리 개선계획 준비

- (1) 위험성평가 후 평가팀과 관련 부서는 상호 충분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여, 적합한 개선계획을 작성한다.
- (2) 위험성 개선계획 작성 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물론, 현 상태 유지(안전보호구 착용 등)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그 내용을 포함한다.

E - 155 - 2016

(3) 이 개선 계획서에는 개선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완료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.

#### 6.2.2 개선계획의 적합성 검토

- (1) 작업계획서를 접수한 안전관리주관부서에서는 평가 및 개선 계획의 적합성을 검 토하고, 적합할 경우 위험성 점검표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, 작업현장의 안전점검 시 위험성 개선내용을 확인한다.
- (2) 위험성평가 절차를 수행한 후 얻어진 위험 저감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, 검토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(가) 위험 저감대책이 현실적인지에 대한 여부
  - (나)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
  - (다) 위험 저감대책 적용 후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저감되었는지 여부
  - (라) 위험성이 높은 순으로 저감대책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

### 6.2.3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보존 및 활용

- (1) 위험성을 평가한 후 평가팀은 반드시 위험성평가 점검표를 작성한다.
- (2) 확정된 위험성평가 점검표는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및 관련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책임자는 동일한 작업이 매일 반복되는 경우에도 매일 해당 작업에 대한 점 검표에 따라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작업자를 교육하고 대책을 강구, 시행하고 위 험성평가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책임자는 작업공정 및 공종에 따른 위험성평가 점검표에 따라 위험요인을 체크하여 대책을 강구, 시행하고 위험성평가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6.2.4 작업계획서의 관리 및 활용

(1) 안전관리주관부서

E - 155 - 2016

- (가) 작업 전 평가, 정기평가 및 필요시평가 후 작성된 작업계획서를 관리하여 차 기 위험성평가 시행 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한다.
- (나) 안전작업계획서 책자 또는 파일로 관리하여 설비 및 작업분류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의 흐름을 알아보기 용이하도록 한다.

## (2) 발주/담당부서

- (가) 발주부서 또는 담당부서는 작업계획서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전기설비 및 작업의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.
- (나) 작업책임자는 설비 및 작업현장의 안전지도 점검에 활용토록 한다.
- 6.3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위험성평가

KOSHA GUIDE(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침) 참조

6.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위험성평가

KOSHA GUIDE(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침) 참조

### 7. 기록 및 관리

- (1) 위험성평가가 완료되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.
- (2) 기록으로 남겨야 할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평가대상 공정, 작업의 명칭 또 는 구체적인 작업내용
  - (나) 유해·위험요인의 파악
  - (다) 위험성 추정 및 결정
  - (라)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
  - (마)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
  - (바) 그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여 정한 사항 등

## <표 5>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정보

# <u>안전보건상 유해위험정보</u>

공정/작업 명			안전보건정보		작업특성	
작업설비					근로자수	명
단위공정/ 작업순서	단위공정 /작업설명	사용 설비,기계 기구,재료 등	사용물질 취급량/ 시간	주요 유해 위험 내용	안전보	건정보원천(Source)
	(작업 전 작업준비) - - - - - (작업 완료 후 현장 정리)				○ 도급(일부, 전부 또 ○ 작업에 대한 과거 ○ 안전작업허가증 필 ○ 중량물의 인력취급 (유 □, 무 □) ○ 작업환경측정 필요 ○ 근로자 특수건강진 ○ 근로자 구성 및 경 - 여성근로자 □ - 1년미만 경력 □ - 고령 □ - 비정규직 □ - 외국인근로자 □	□, 무 □)  , 무 □)  □)  □·전보건상 문제 유무(유 □, 무 □)  는 혼재작업) (유□, 무 □)  아차사고/재해발생(유 □, 무 □)  요 작업여부 (유 □, 무 □)  시 단위중량 5kg 이상 여부  (유 □, 무 □)  단 유무 (유 □, 무 □)  력특성
	20 04)				- 장애인 □ ○ 그 밖에 위험성평기	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

<sup>※</sup> 윗 표의 내용은 작업종류, 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할 수 있음

## <표 6> 작업공정 별 유해 위험요인 파악

#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

공정/작업명			단위작업/공정명								
순서	평가구분	표준유해위험요인체크 (■ □									
4	기계적(설	□ 1.1 회전체(감김, 끼임 등)	□ 1.2 사다리, 개구부 등(추락)	□ 1.3 설년	비류(넘어짐, 충돌)	□ 1.4 날카로운 표면(절단,베임,찔림)					
1.	비)요인	□ 1.5 물체(비래,낙하,분출 등)	□ 1.6 용기류(폭발, 파열)	□ 1.7 기目	타						
		□ 2.1 누전(감전)	□ 2.2 충전부 노출(감전)	□ 2.3 접근	근한계 거리 미확보(감전)	□ 2.4 단락, 과전류(화재)					
2.	전기적 요인	□ 2.5 아크(화상,화재)	□ 2.6 정전기(화재,폭발)	□ 2.7 오점	작동,오조작(감전,화재)	□ 2.8 방폭기기 미설치(폭발)					
		□ 2.9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(감전)	□ 2.10 로봇 등(전자파오작동)								
3.	화학(물질) 적	□ 3.1 인화성가스(화재, 폭발)	□ 3.2 인화성증기(화재, 폭발)	□ 3.3 인호	화성액체(화재, 폭발)	□ 3.4 가연성 분진(폭발)					
J.	ㄱ 요인	□ 3.5 타물질 접촉시 반응(폭발)	□ 3.6 자연발화(화재, 폭발)	□ 3.7 이성	상반응(화재, 폭발)	□ 3.8 기타(화재, 폭발)					
4.	생물학적	□ 4.1 동물	□ 4.2 식물	□ 4.3 유전	전자 변형 물질(GMO)	□ 4.4 알러지 및 미생물					
4.	요인	□ 4.5 병원성 미생물, 바이러스(감염)	□ 4.6 방사능	□ 4.7 기目	타						
		□ 5.1 저압/고압환경	□ 5.2 소음발생	□ 5.3 진동	동발생	□ 5.4 중량물 취급(근골격계질환)					
5.	작업특성	□ 5.5 반복 작업(근골격계질환)	□ 5.6 불안정한 행동(근골격계질환)	□ 5.7 산≤	소결핍(질식)	□ 5.8 유해가스, 물질(중독)					
	요인	□ 5.9 근로자실수(휴먼에러, 유해요인, 인간공학)	□ 5.10 컴퓨터단말기 조작 (근골격계질환)	□ 5.11 기	타						
	작업환경/	□ 6.1 외부환경(고온, 한랭, 강풍, 풍수해 등)	□ 6.2 작업장 바닥(넘어짐, 미끄러짐 등)	□ 6.3 부적	적절한 조명	□ 6.4 작업 공간협소					
6.		□ 6.5 이동통로 미확보	□ 6.6 안전보건조직 미비/부적절	□ 6.7 작업	업표준(SOP) 미비/부적절	□ 6.8 안전·보건표지 미설치					
	요인	□ 6.9 무자격자	□ 6.10 개인보호구 미착용								

<sup>※</sup> 윗 표의 내용은 작업종류, 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할 수 있음

## <표 7> 위험성 평가표

# 위험성평가표

평가작업명					단위	공정/작업	성공정			
평가				위험성평가표		평가팀 명단				
평가장소					위험성추정			위험감소대책		
평가구분	유해	· 위험요인(상해종류)	관련법근거 (안전보건규칙)	현재 안전보건 조치	빈도 강도 위험		등록번 호			

<sup>※</sup> 윗 표의 내용은 작업종류, 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할 수 있음

## <표 8> 위험성 관리개선계획서

# 위험성관리개선계획서

평가공정/2	다어대				위험성관리계획	실행팀	담당 :		팀장 :	
8/168/	8 B B				기참당한다계획		담당 :		팀장 :	
공정/	단위위험 등록번호	가	선전 위	험성	위험감소대책 세부내용	가	선 후 위험	험성	감소대	책의 실행
공정/ 작업명	등록번호	빈도	강도	위험성	기임심모네씩 세구네용	빈도	강도	위험성	요구일	실행예정일

<sup>※</sup> 윗 표의 내용은 작업종류, 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할 수 있음